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

도시관리계획 [한양대역세권(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 -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-572호(2026.4.16.)로 열람 공고하고, 2026년 제10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06.10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78호(2010.03.04.)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호(2014.01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77호(2014.03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7호(2017.1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호(2018.01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8호(2020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2호(2021.0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4호 (2025.08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5호(2025.08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40호(2025.11.20.)로 결정(변경)된 "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"의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) 및 계획 결정 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16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취지

- 한양대역세권(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[한양대 역세권(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]을 결정 및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

① 한양대역세권(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①	한양대역세권 (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	-	증)21,800.7	21,800.7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(m ²)	결정사유
신설	①	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	21,800.7	·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.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21,800.7	-	21,800.7	100.0	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15,217.6	감)13,808.5	1,409.1	6.5	
	제3종일반주거지역	6,583.1	감)6,453.0	130.1	0.6	
	준주거지역	-	증)20,261.5	20,261.5	92.9	

■ 용도지구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) 도시기반시설

1)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대로	1	16	35~44	주간선	5,910	행당동 행당광장	성동교앞 (행당동 71-9)	일반도로	건고2493 '66.6.21.	왕십리로
변경	대로	1	16	35~44 (36)	주간선	5,910 (186)	행당동 행당광장	성동교앞 (행당동 71-9)	일반도로		
기정	중로	1	448	20.5~25.5	집산도로	444	행당동 20-7	행당동 77-1	일반도로	'08.07.31	살곶이길
변경	대로	3	A	20.5~30 (30)	집산도로	444 (285)	행당동 20-7	행당동 77-1	일반도로		
신설	소로	3	A	6	국지도로	57	행당동 37-5	행당동 37-31	일반도로	-	살곶이 8길

※ ()는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1-16	대로 1-16	- 폭원(B) : 35~44m (구역 내 36m) - 연장(L) : 5,910m (구역 내 186m)	· 왕십리로 교통시설 체계를 고려한 폭원 확장
중로 1-448	대로 3-A	- 폭원(B) : 20.5~30.0m (구역 내 30m) - 연장(L) : 444m (구역 내 285m)	· 살곶이길의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반영한 폭원 확장
-	소로 3-A	- 폭원(B) : 6m (구역 내 6m) - 연장(L) : 57m (구역 내 57m)	· 기존 협소한 현황도로의 재정비 및 긴급 차량의 진입로 확보 등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

2) 사회복지시설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

구 분	시설명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사회복지시설	행당동 39-5번지 일원	-	증)488.3	488.3	-	

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m)
60% 이하	400% 이하	50m 이하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

구 분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고
신설	사회복지시설	사회복지시설 신설	·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결정	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

■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획지번호	면 적(m ²)	위 치	비 고
신설	①	19,773.2	행당동 31-11번지 일원	공동주택

※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
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■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용 도	구 분	계획내용	
공동주택 ①	허용용도 (A)	◦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 1]의 다음 각 항목 - 제2호의 공동주택 -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 - 제7호의 판매시설 - 제11호의 노유자시설 - 제13호의 운동시설 - 제14호의 업무시설	
	건폐율	◦ 60% 이하	
	용 적 률	기준	◦ 216.32%
		상한	◦ 500.00% 이하
	최고높이	◦ 150m 이하	

■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건축물 형태		◦ 탑상형 위주 배치 - 대형필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야확보 및 랜드마크 부여 - 가로변 시각통로 확보 및 고층부 개방감 부여	
외관	색채	◦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	
	재료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	
건축한계선		◦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	

다) 상한용적률 인센티브

○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(25.1.24.) 준용

■ 공공기여계획

구 분	계획내용		비 고	
공공기여 기준	기준용적률		◦ 216.32% 이하	
	상한용적률		◦ 500% 이하	
	완화용적률의 1/2		◦ 141.84% 이상 - 완화용적률(283.68%)의 1/2 이상	부지면적 환산 5,609.26㎡
공공기여 제공계획	총 공공기여 제공량		◦ 142.00% - 장기전세주택 98.40% - 공공시설 43.60%	부지면적 환산 5,635.14㎡
	공공기여시설	장기전세주택	◦ 총 208세대(59㎡, 84㎡) 계획	계획기준 전용 84㎡ 이하
		공공시설	◦ 건축물 기부채납: 사회복지시설 - 연면적: 1,900.0㎡ - 규모: 지하1층~지상7층 - 용도: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◦ 도로 : 550.71㎡	토지면적 기준

※ 사회복지시설의 건축형태 등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.

■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

구 분		운영기준	계획내용																
필수	지속가능형 공동주택	◦ 「건축법」 제8조에 의한 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”인 공동주택 또는 「주택법」 제38 조에 의한 “장수명 주택”으로 계획 ◦ 적합 여부는 「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」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	리모델링이 쉬운구조 (라멘구조)																
	환경성능부문	◦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(서울특별시 고시)」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 분을 적용하여 ㉠ 환경성능부문 ㉡ 에너지성능부문 ㉢ 에너지관리부문 ㉣ 신·재생 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	㉡기준으로 상향 적용																
	에너지성능 부문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주거</th><th>비주거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㉡</td><td>1,000세대 이상</td><td>연면적 합계 10만㎡ 이상</td></tr><tr><td>㉢</td><td>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</td><td>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</td></tr><tr><td>㉣</td><td>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</td><td>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</td></tr><tr><td>㉤</td><td>30세대 미만</td><td>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</td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분	주거	비주거	㉡	1,000세대 이상	연면적 합계 10만㎡ 이상	㉢	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	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	㉣	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	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	㉤	30세대 미만	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		㉡기준으로 상향 적용
		구분	주거	비주거															
		㉡	1,000세대 이상	연면적 합계 10만㎡ 이상															
		㉢	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	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															
	㉣	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	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																
㉤	30세대 미만	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																	
에너지관리 부문			㉣기준 적용																
신·재생에너지	◦ 단,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(서울특별시 고시)」 적용대상의 구분이 최상 일 경우(㉡)는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과 동일 고시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 ◦ 사업시행계획인가,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계획내용을 착공 전까지 예비 인증, 사용승인 시 인증받아야 함	㉣기준 적용																	
역사문화보전	◦ 사업대상지에 「문화재 보호법」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·생활 문화 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	해당없음																	
권장	커뮤니티 지원시설	◦ 공동주택 거주자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의 일 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입안권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필요 시 설치	-																

라) 공공기여 산정

■ 장기전세주택 설치계획

구 분	세대수	전용면적	공급면적	대지지분
59A	20세대	59.98㎡	88.09㎡	354.16㎡
59B	148세대	59.98㎡	86.45㎡	2,571.86㎡
소 계	168세대	10,076.64㎡	14,556.40㎡	2,926.02㎡
84A	8세대	84.98㎡	122.08㎡	196.32㎡
84B	32세대	84.95㎡	122.62㎡	788.75㎡
소 계	40세대	3,398.24㎡	4,900.48㎡	985.07㎡
합 계	208세대	13,474.88㎡	19,456.88㎡	3,911.09㎡

※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기준에 따라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.

■ 사회복지시설 공공기여 산정

구 분	산출값		비 고
대지지분	488.3㎡		◦ 기부채납 토지의 대지면적
연면적	1,900.0㎡		◦ 건축계획(안)에 따른 연면적
공사비 산정	건축비	7,733,000,000원	◦ 「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」 : 노인복지센터 4,477,000원/㎡ ◦ 연면적 X 건축비 단가 / 부가세 = 1,900㎡ X 4,477,000원/㎡ / 1.1
	설계비	330,189,356원	◦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 제2절 3-2-2. 적용 ◦ 7,733,000,000원(건축비) X (4.270(설계비율) / 100)
	감리비	81,475,043원	◦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 제2절 3-2-2. 적용 ◦ 7,733,000,000원(건축비) X (1.054(감리비율) / 100)
총 공사비	8,144,664,399원		◦ 건축비 + 설계비 + 감리비 ◦ 7,733,000,000원 + 330,189,356원 + 81,475,043원 = 8,144,664,399원
부지가액	11,889,238원		◦ 2025년 공시지가 X 2 ◦ 5,944,619원/㎡ X 2 = 11,889,238원
환산부지면적	685.05㎡		◦ 연면적 X 건축비 / 부지가액 ◦ 1,900㎡ X 8,144,664,399원 / 11,889,238원 = 685.05㎡
기부채납 면적	1,173.35㎡		◦ 대지지분 + 환산부지면적 ◦ 488.3㎡ + 685.05㎡ = 1,173.35㎡

※ 「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」 및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.

※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■ 공공기여 산정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기준/상한 용적률	216.32% / 500% 이하	◦ 기준용적률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값 ◦ 상한용적률 :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」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
용적률 증가분	283.68%	◦ 상한용적률 - 기준용적률 : $500\% - 216.32\% = 283.68\%$
증가 용적률의 1/2	141.84%	◦ 용적률 증가분의 50% : $283.68\% \times 50\% = 141.84\%$ 이상
증가용적률 1/2의 대지지분 (A)	5,609.26㎡	◦ 획지면적 x (장기전세주택 지상부연면적 ÷ 전체 지상부연면적) $= 19,773.2\text{㎡} \times ((19,773.2\text{㎡} \times 141.84\%) \div (19,773.2\text{㎡} \times 500\%))$
기반시설 제공 대지지분 (B)	1,724.06㎡ (43.60%)	◦ 대지지분 : 기반시설 면적 x 기반시설 용적률 ÷ 상한용적률 $= \{(1,214.2\text{㎡} \times 200\%) + (130.1\text{㎡} \times 250\%) + (1,173.3 \times 500\%)\} \div 500\%$ ◦ 용적률: 기반시설 면적 x 기반시설 용적률 ÷ 획지면적 $= \{(1,214.2\text{㎡} \times 200\%) + (130.1\text{㎡} \times 250\%) + (1,173.3 \times 500\%)\} \div 19,773.2\text{㎡}$
장기전세주택 필요 대지지분 (A-B)	3,885.20㎡ (98.24%)	◦ 장기전세주택 대지지분 - 기반시설 대지지분 $= 5,609.26\text{㎡} - 1,724.06\text{㎡}$
장기전세주택 계획 대지지분	3,911.09㎡ 계획 (208세대, 98.40%)	◦ 획지면적 x (장기전세주택 공급면적 ÷ 용적률산정용 전체연면적) $= 19,773.2\text{㎡} \times (19,456.88\text{㎡} \div 98,365.90\text{㎡})$

※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

1.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

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전면공지	◦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(보도 부속형)	건축한계선 3m
공공보행통로	◦ 원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6m 이상 폭원 확보	

②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사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 경	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	행당동 19번지 일대	95,079.0	감)6,871.0	88,208.0	서고 제2010-78호 (2010. 3. 4.)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 분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 경	행당동 19번지 일대	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제척 (감 6,871.0m ²)	· 한양대역세권(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"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"의 일부 중첩 구역을 제척하고자 함.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95,079.0	감)6,871.0	88,208.0	100.0	
주 거 지 역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22,826.0	감)290.6	22,535.4	25.6	
	제2종일반주거지역	57,608.0	-	57,608.0	65.3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4,645.0	감)6,580.4	8,064.6	9.1	

※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일부 제척구역으로 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
 ※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이 될 수 있음.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 분	위 치	변경내용		면 적(m ²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변 경	성동구 행당동 28-19번지 일대	제3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감)6,580.4	·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으로 인한 면적 감소
	성동구 행당동 28-13번지 일대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감)290.6	·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으로 인한 면적 감소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3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4. 인센티브 운용 계획 : 변경없음
5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가).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- 나). 특별계획구역 지침(변경)
 - 1)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: 변경없음
 - 2)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(변경)

■ 계획내용(변경)

구 역 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특별계획가능구역	행당동 32-1번지 일대	8,390.0	감)6,871.0	1,519.0	-

■ 계획내용 변경 사유서

구 역 명	위 치	면 적(m ²)	변경사유
특별계획 가능구역	행당동 32-1번지 일대	1,519.0	·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"한양대 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"의 일부 중첩 구역을 제척으로 인한 변경

- 3)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: 변경없음

- 이하 여백 -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기정)

가 구		위 치		면적(㎡)	공동개발	비고
번호	면적(㎡)	동명	지번			
A35	8,390	행당동	27-3	20		
			27-6	46		
			27-7	17		
			28-7	510	지정	
			28-19	540		
			28-16	50		
			28-11	46	지정	
			28-23	69		
			28-12	119		
			28-13	102		
			28-6	43	지정	
			28-24	73		
			31-8	7		
			31-17	63		
			28-29	23		
			31-2	294		
			31-4	26	지정	
			31-9	23		
			31-11	397		
			31-10	50		
			31-7	400	지정	
			31-22	86		
			31-12	96		
			31-13	102		
			31-14	156		
			31-20	134		
			31-21	47		
			32	142		
			32-1	291		
			32-2	142		
			32-3	102		
			32-5	40		
			32-6	431		
			32-43	79		
			32-9	50		
			32-11	50		
			32-12	30		
			32-13	30		
			32-14	202		
			32-15	53		
			32-16	53		
			32-17	96		
			32-18	20		

가 구		위 치		면적(㎡)	공동개발	비고
번호	면적(㎡)	동명	지번			
A35	8,390	행당동	32-19	56		
			32-20	13		
			32-21	36		
			32-22	36		
			32-23	26		
			32-24	149		
			32-25	142		
			32-26	119		
			32-27	122		
			32-28	96		
			32-29	106		
			32-30	116		
			32-31	205		
			32-32	195		
			32-33	182		
			32-34	165		
			32-35	152		
			32-36	66		
			32-37	136		
			32-38	252		
			32-40	7		
			32-45	40		
			32-46	6		
			32-47	58		
			32-48	94		
			33	66		
			33-5	50		
			33-6	46		
			33-7	136		
			33-8	57		
			33-9	86		
			33-10	19		
			32-44	5		

※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※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최대개발규모는 적용하지 않음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가 구		위 치		면적(㎡)	공동개발	비고
번호	면적(㎡)	동명	지번			
A35	1,519	행당동	27-3	20		
			27-6	46		
			27-7	17		
			28-7	510	지정	
			28-19	540		
			28-16	50		
			28-11	46	지정	
			28-23	69		
			28-12	119		
			28-13	102		

※ 상지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※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최대개발규모는 적용하지 않음

라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- 이하 여백 -

Ⅲ. 관련도서 : 붙임 참조 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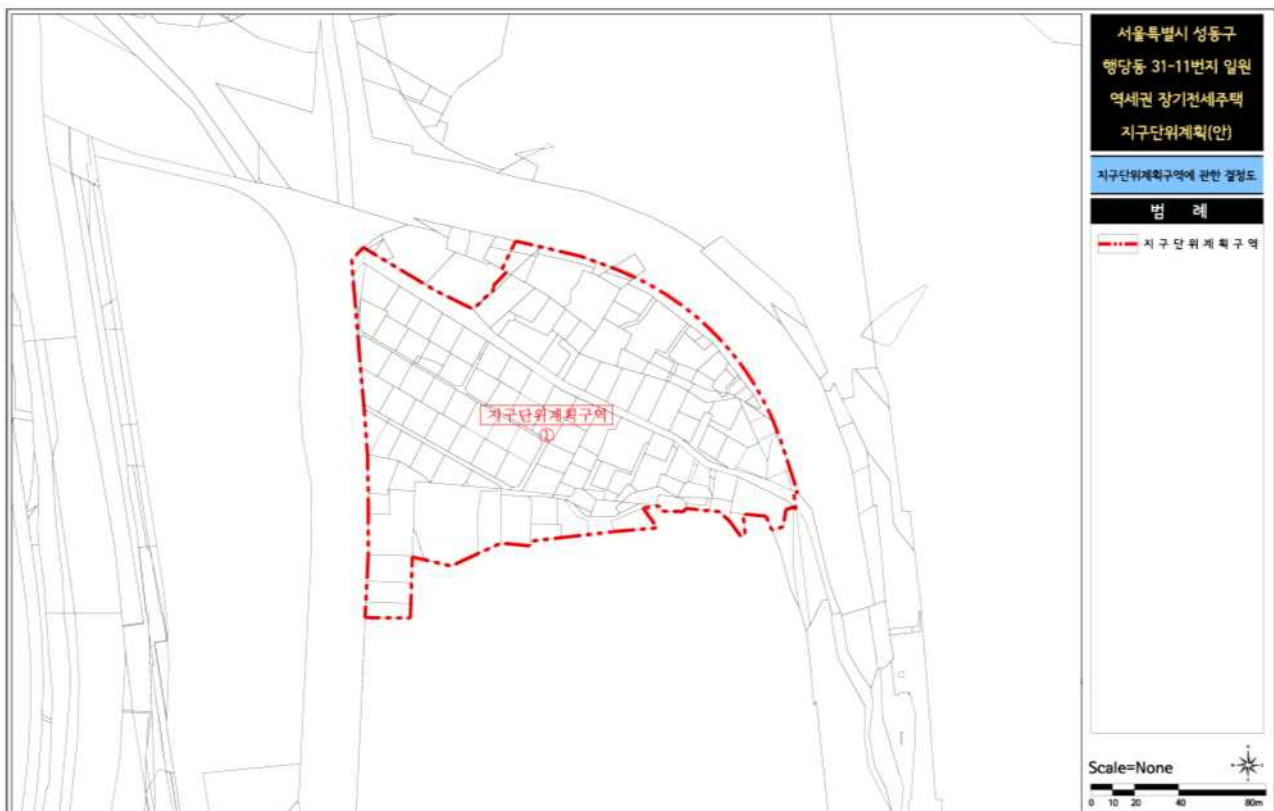
- 첨부된 지형도면 등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고시 관련 세부 내용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02-2133-7060)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(02-2286-5553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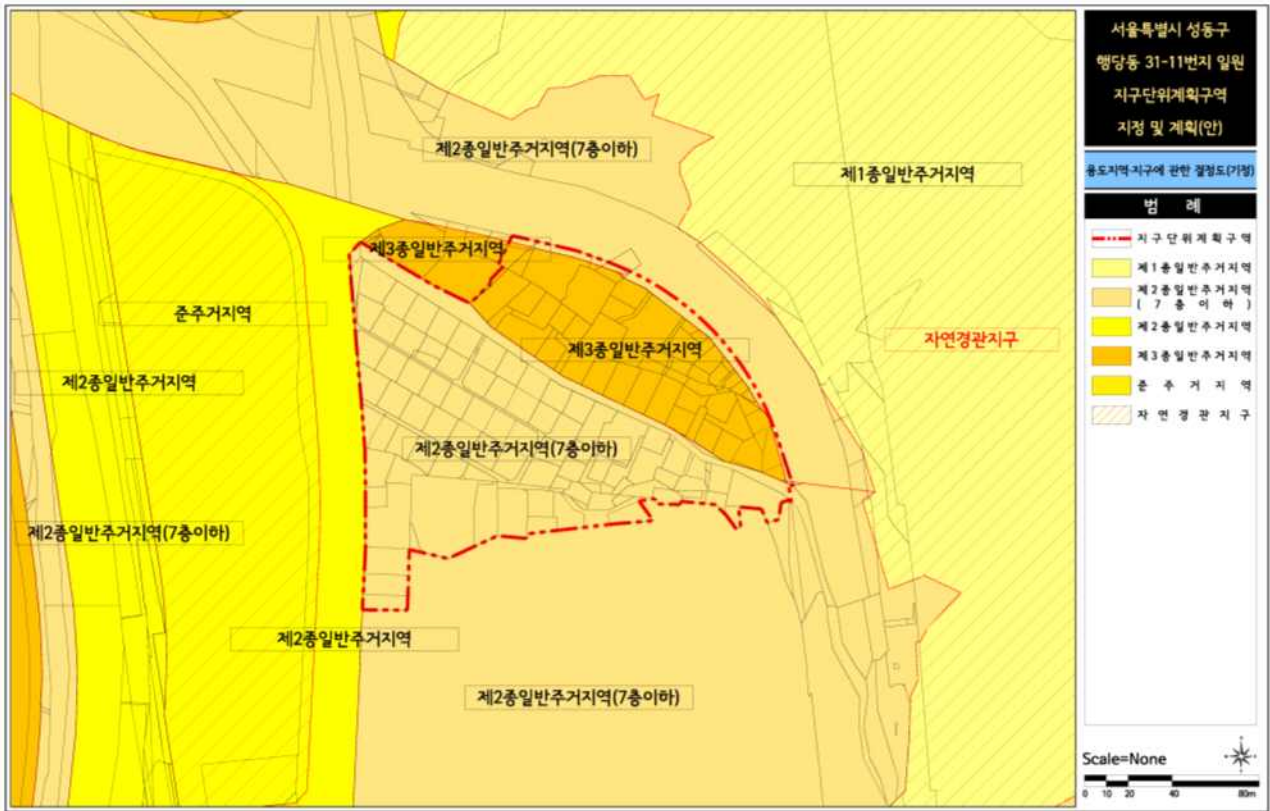
- 고시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 및 서울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붙임: 결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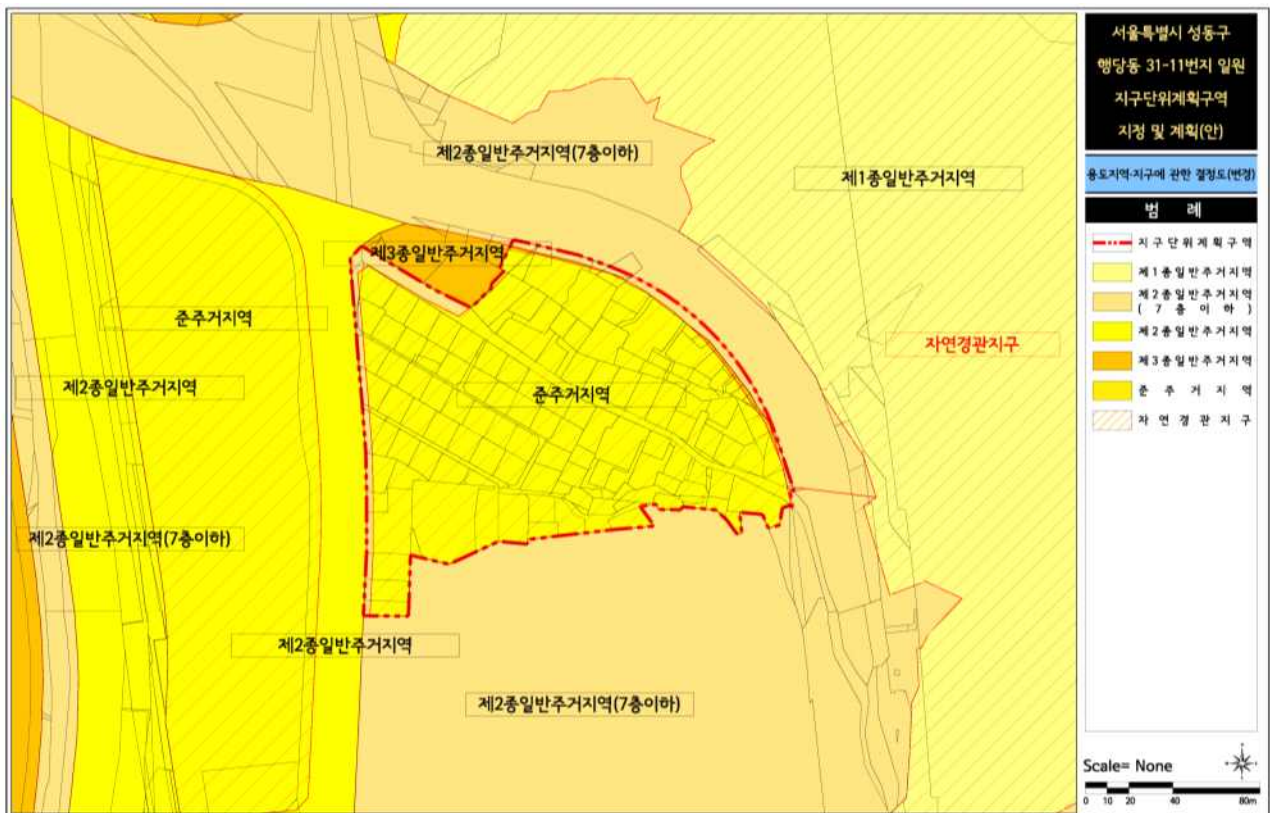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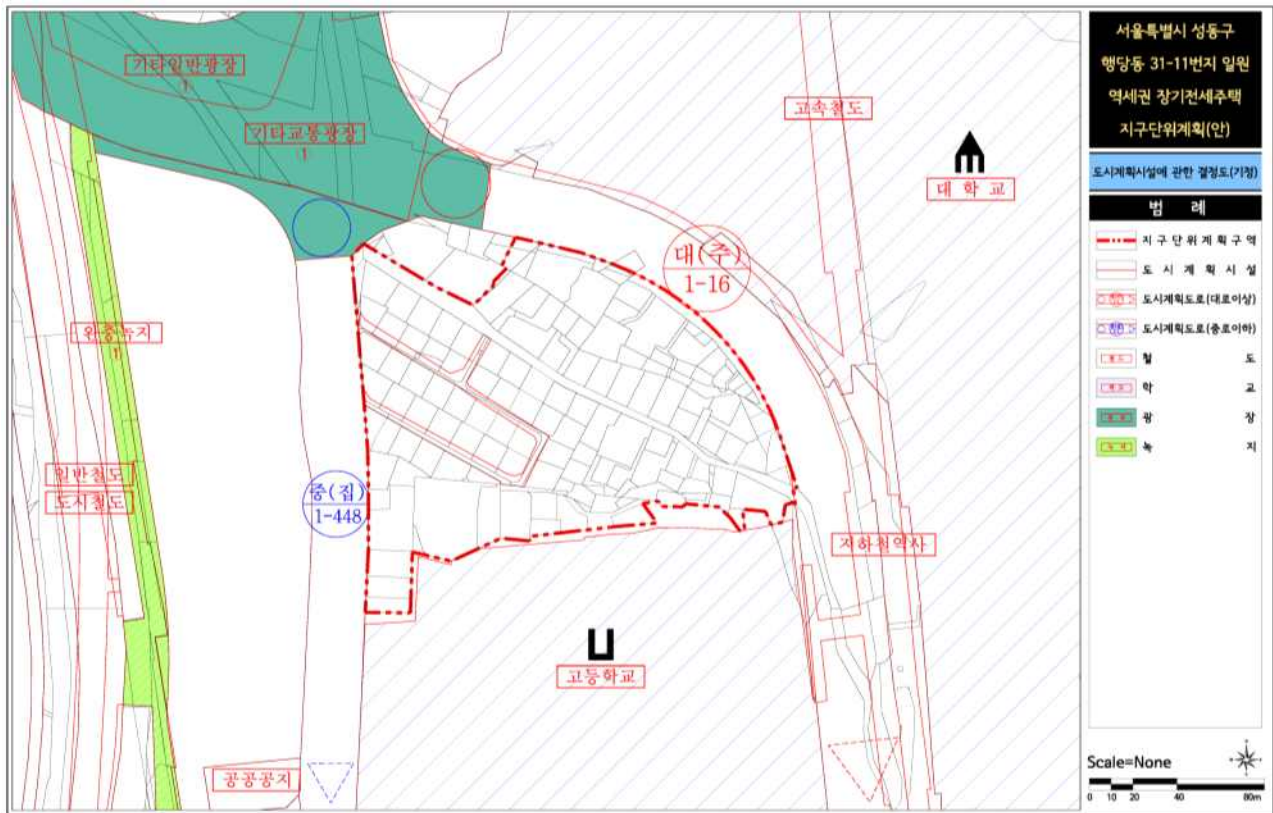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기정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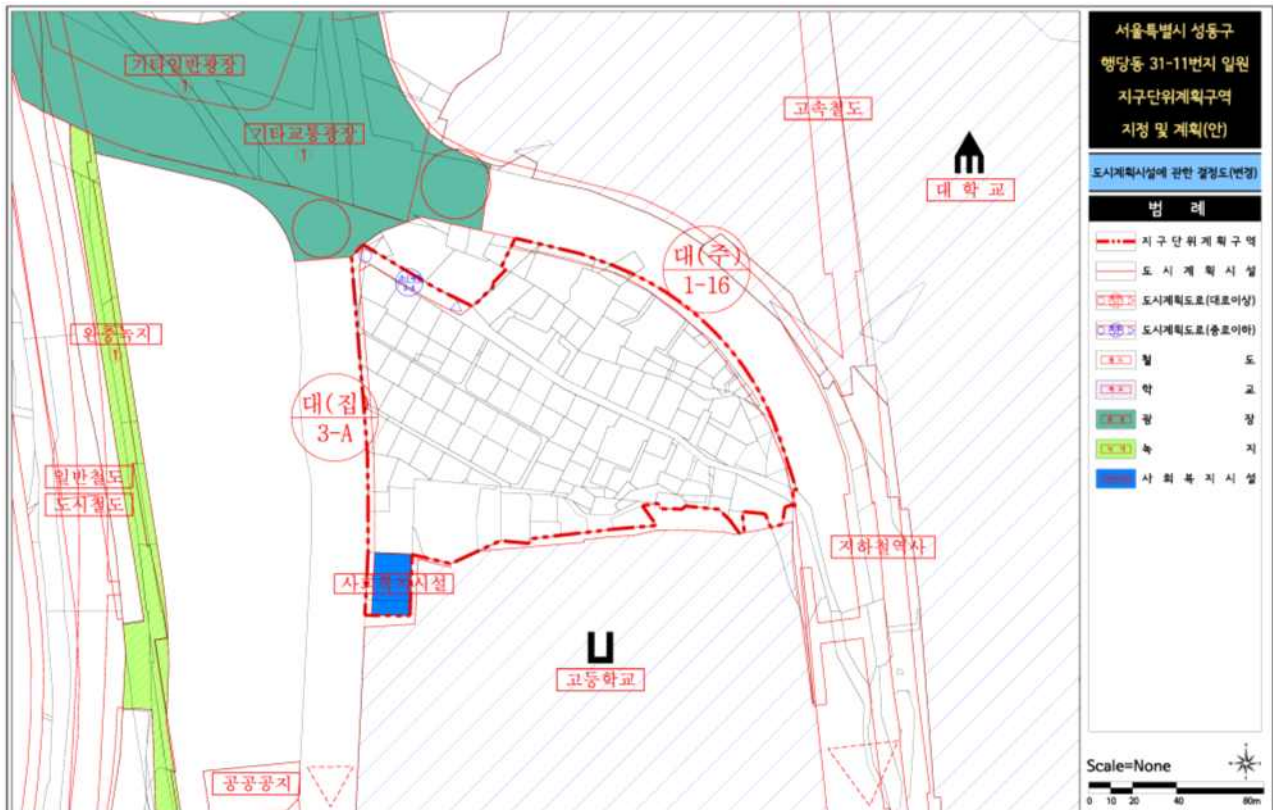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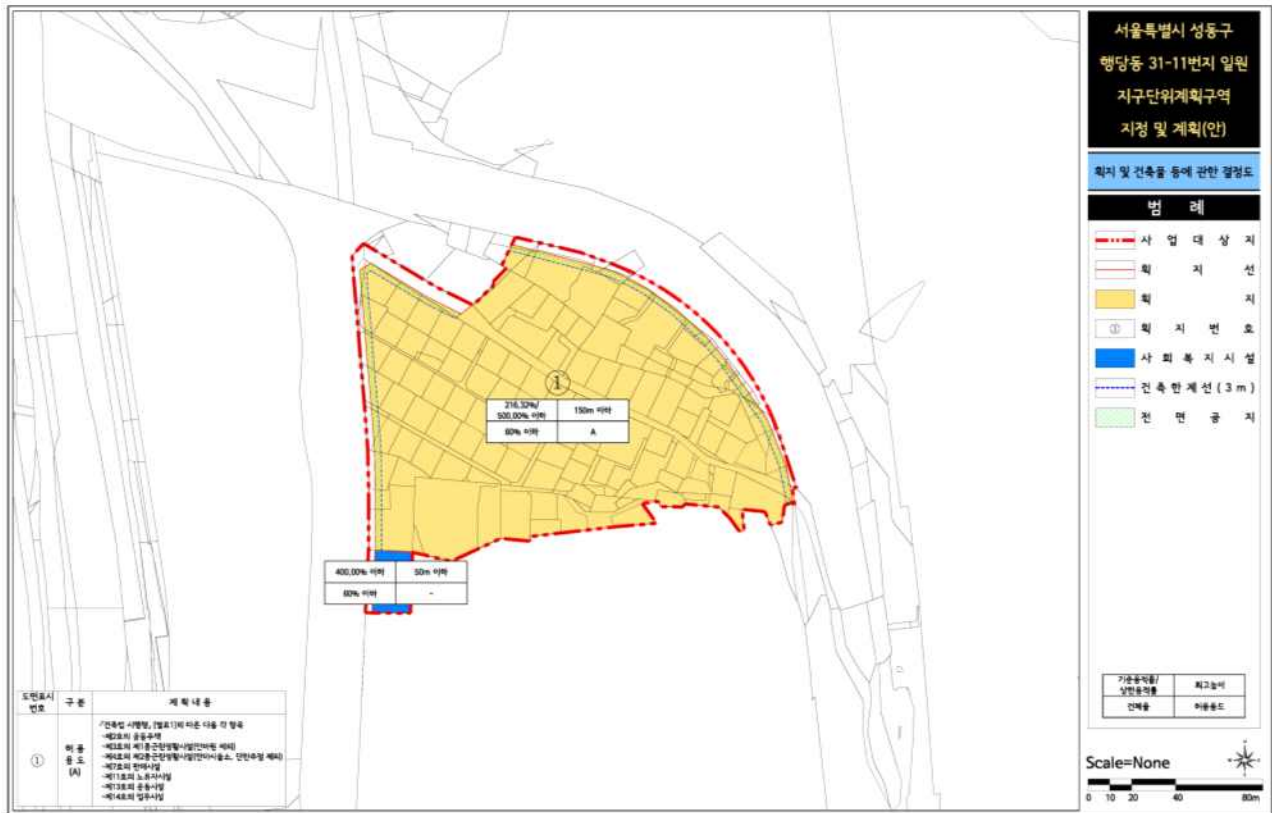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(기정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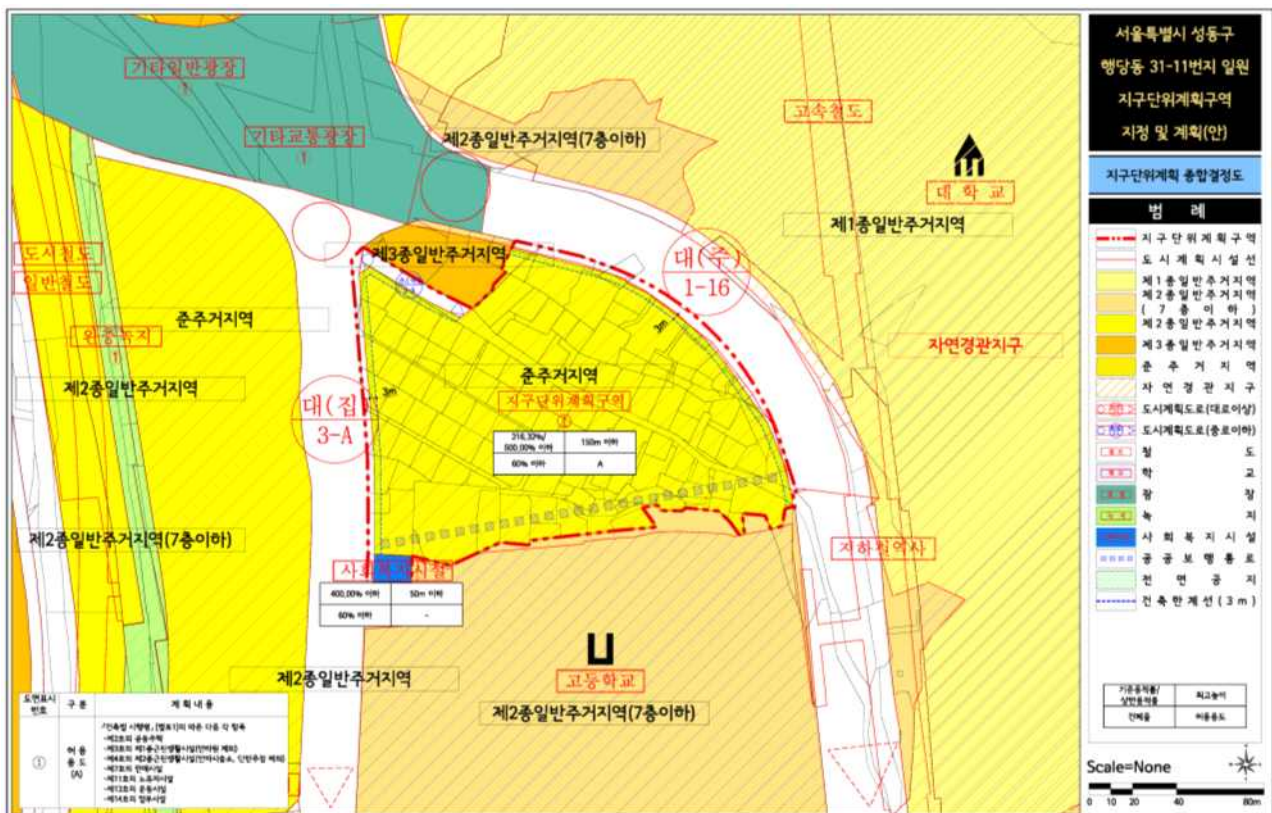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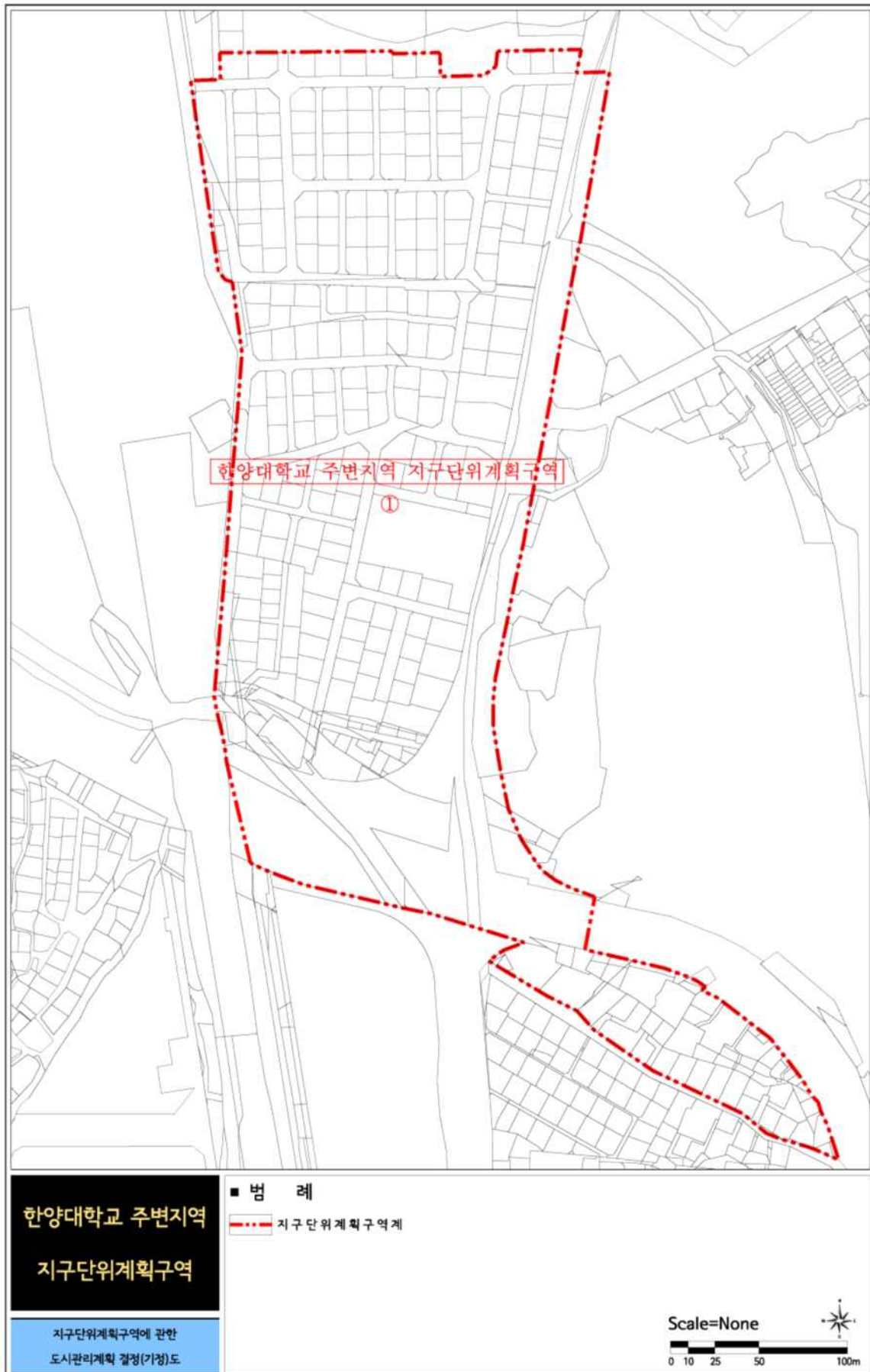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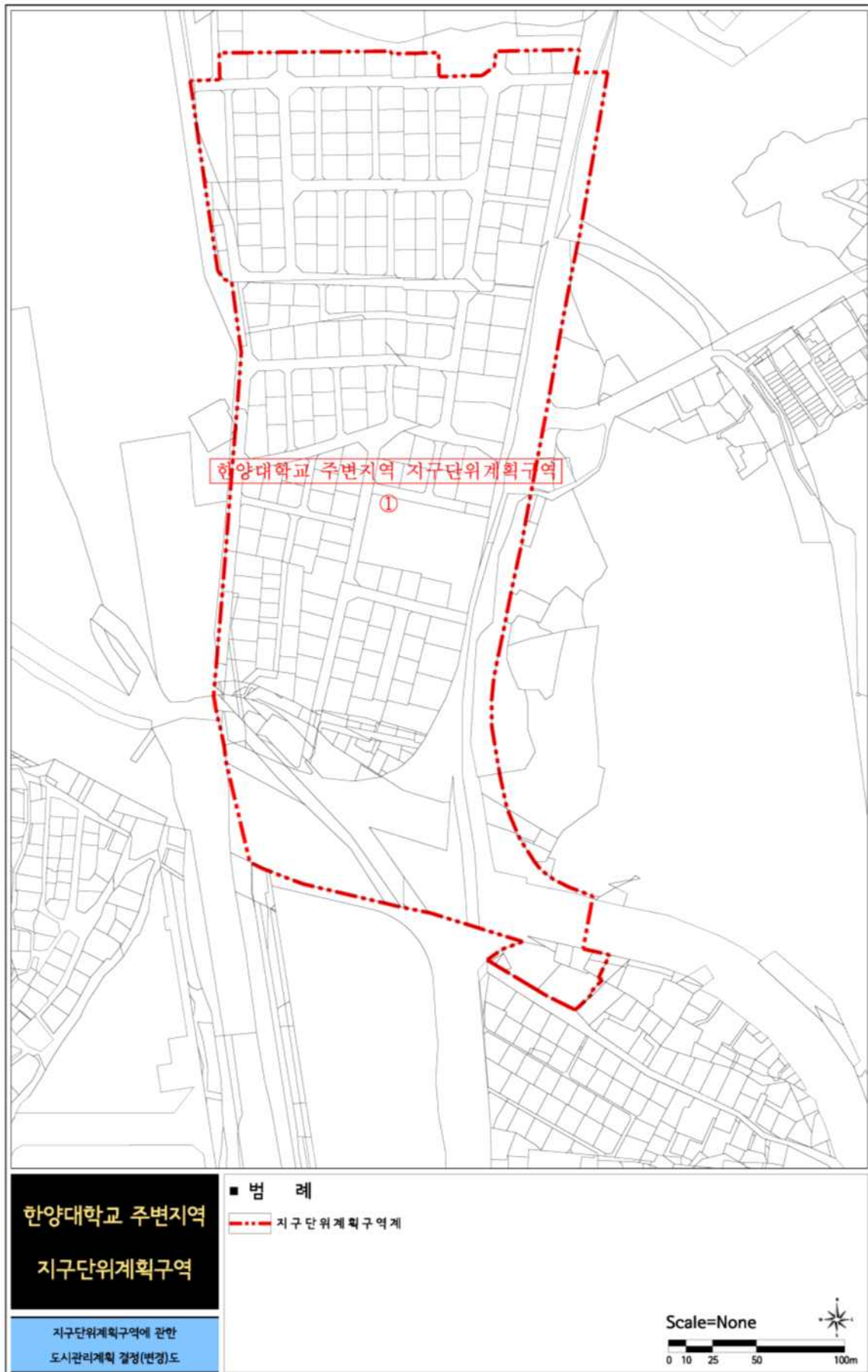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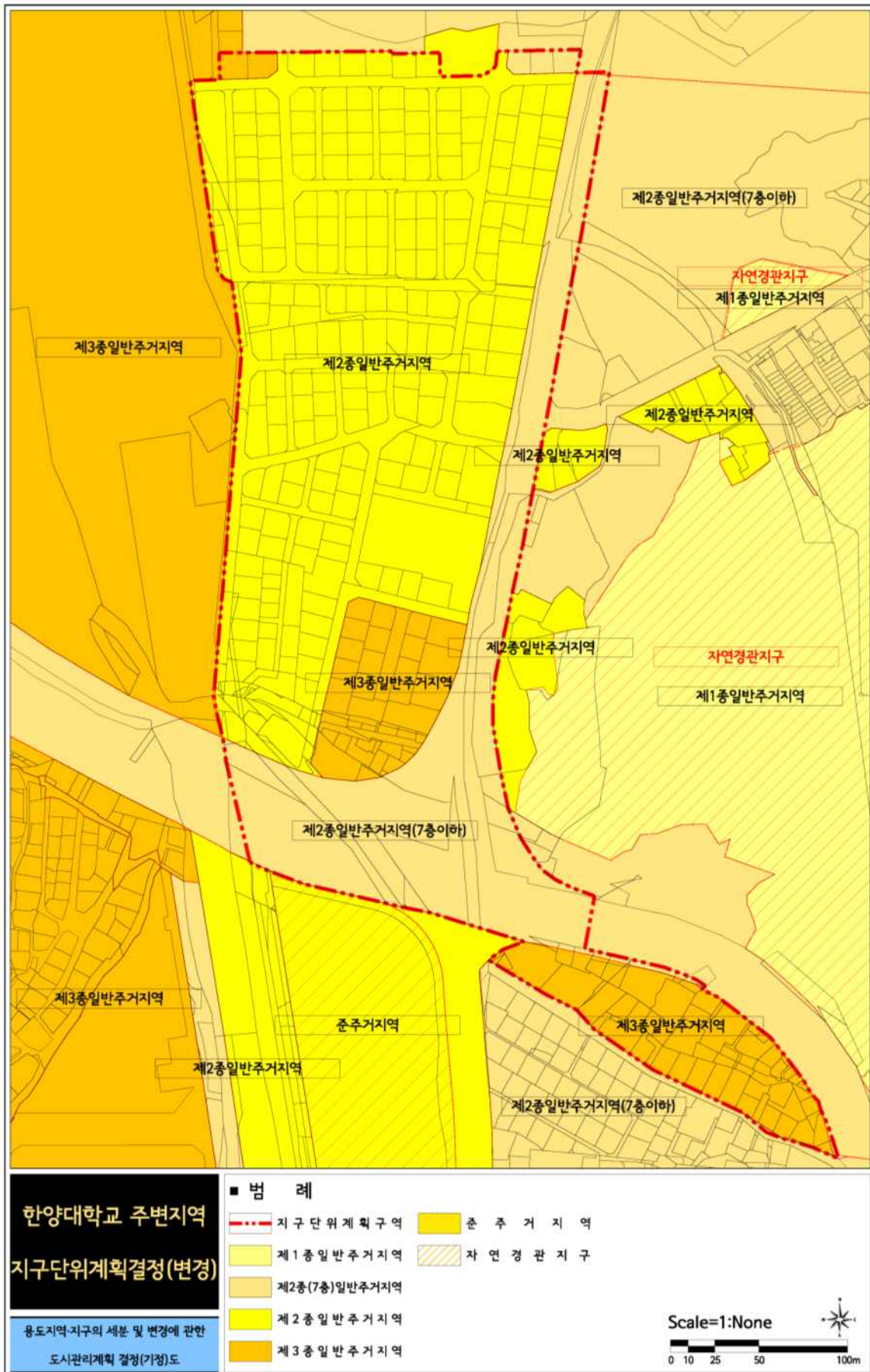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기정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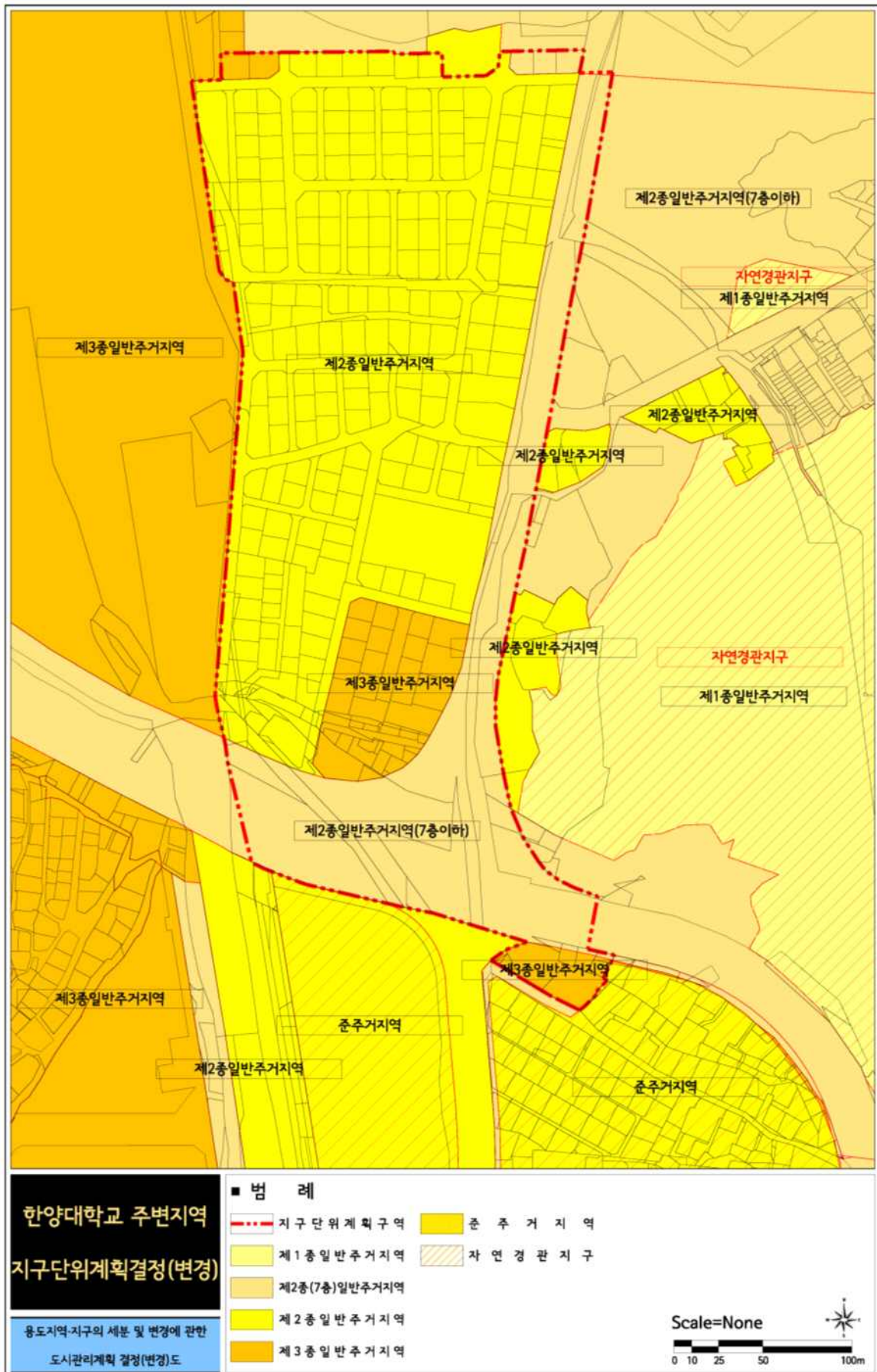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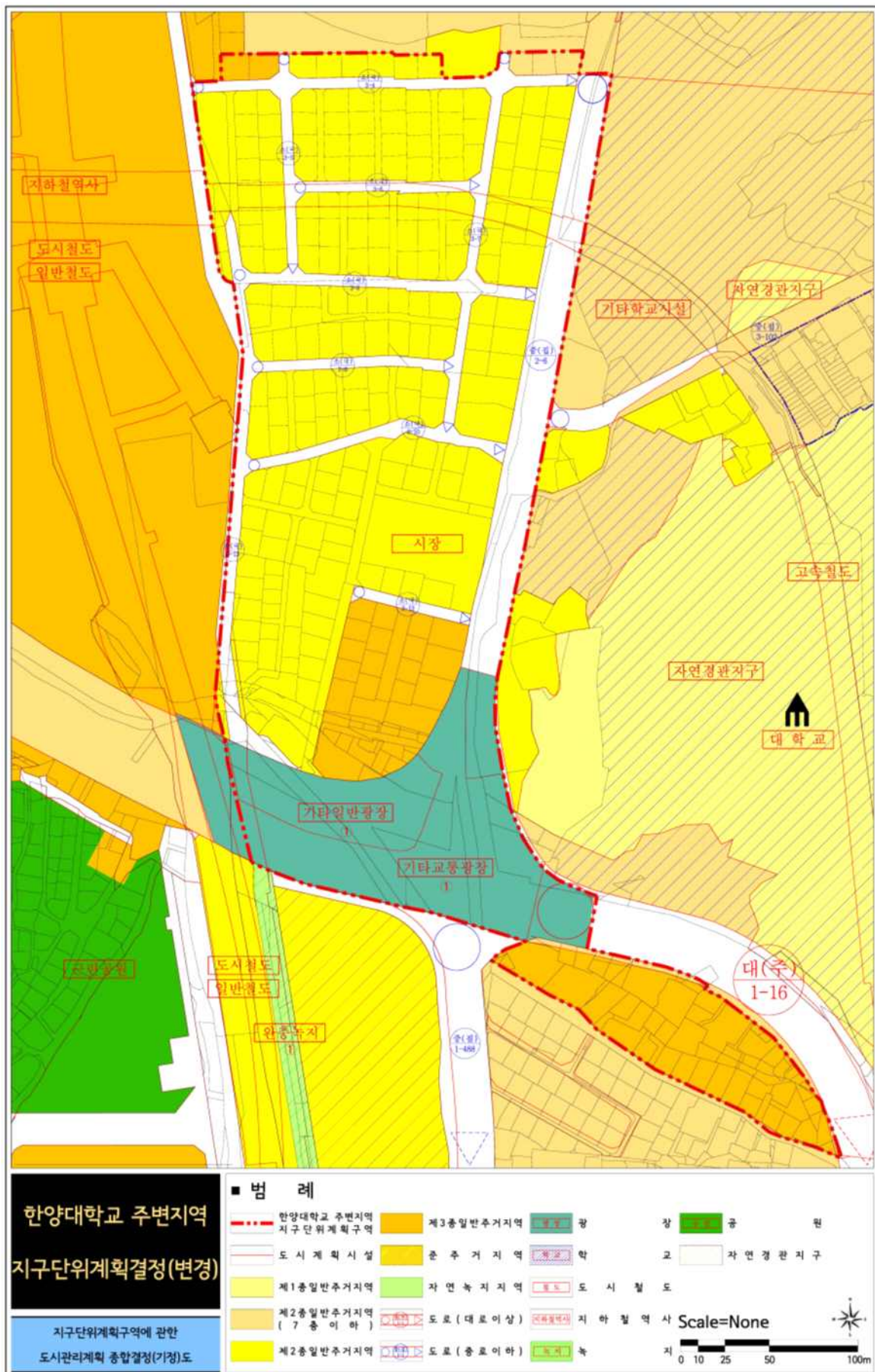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가정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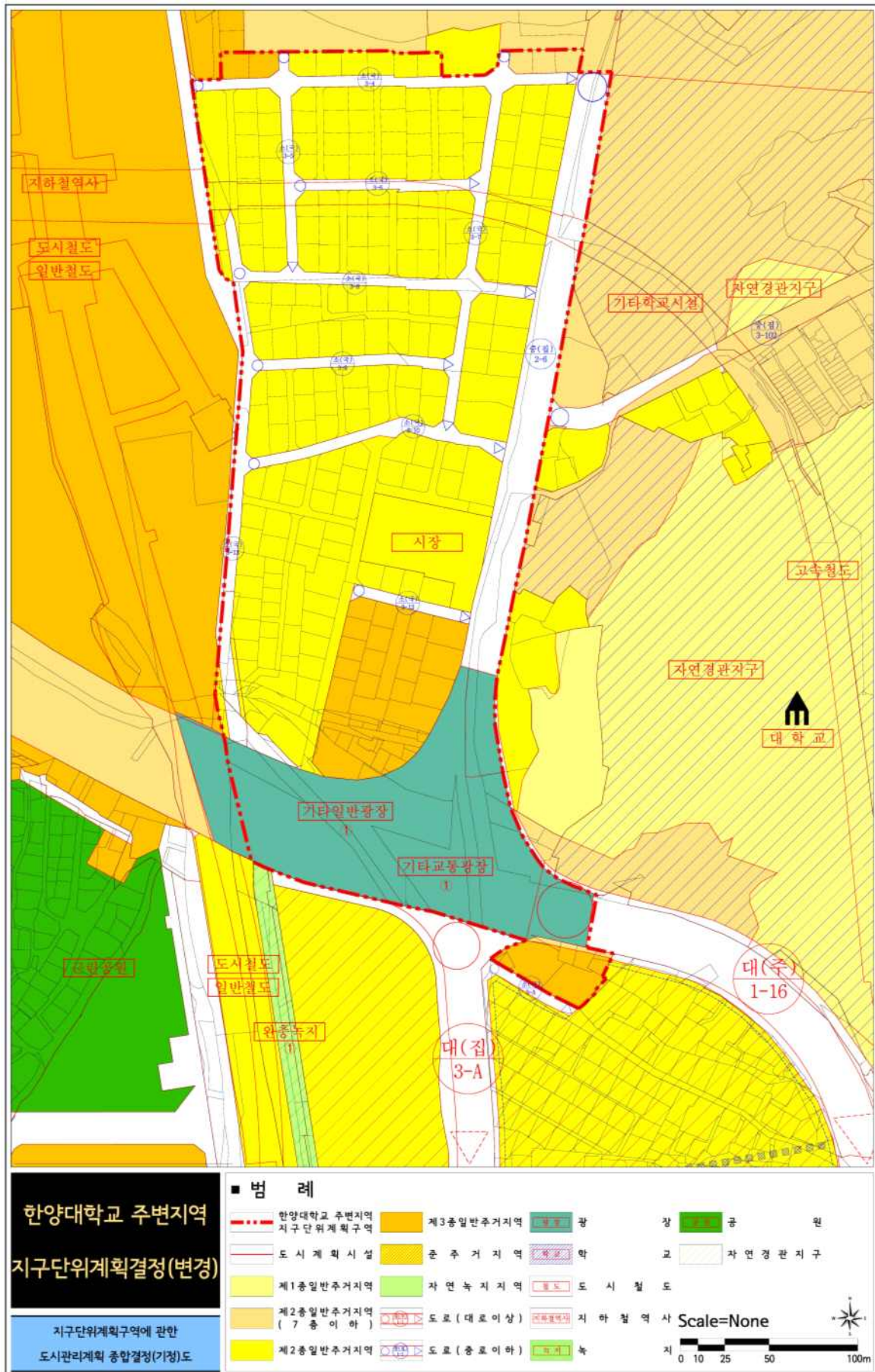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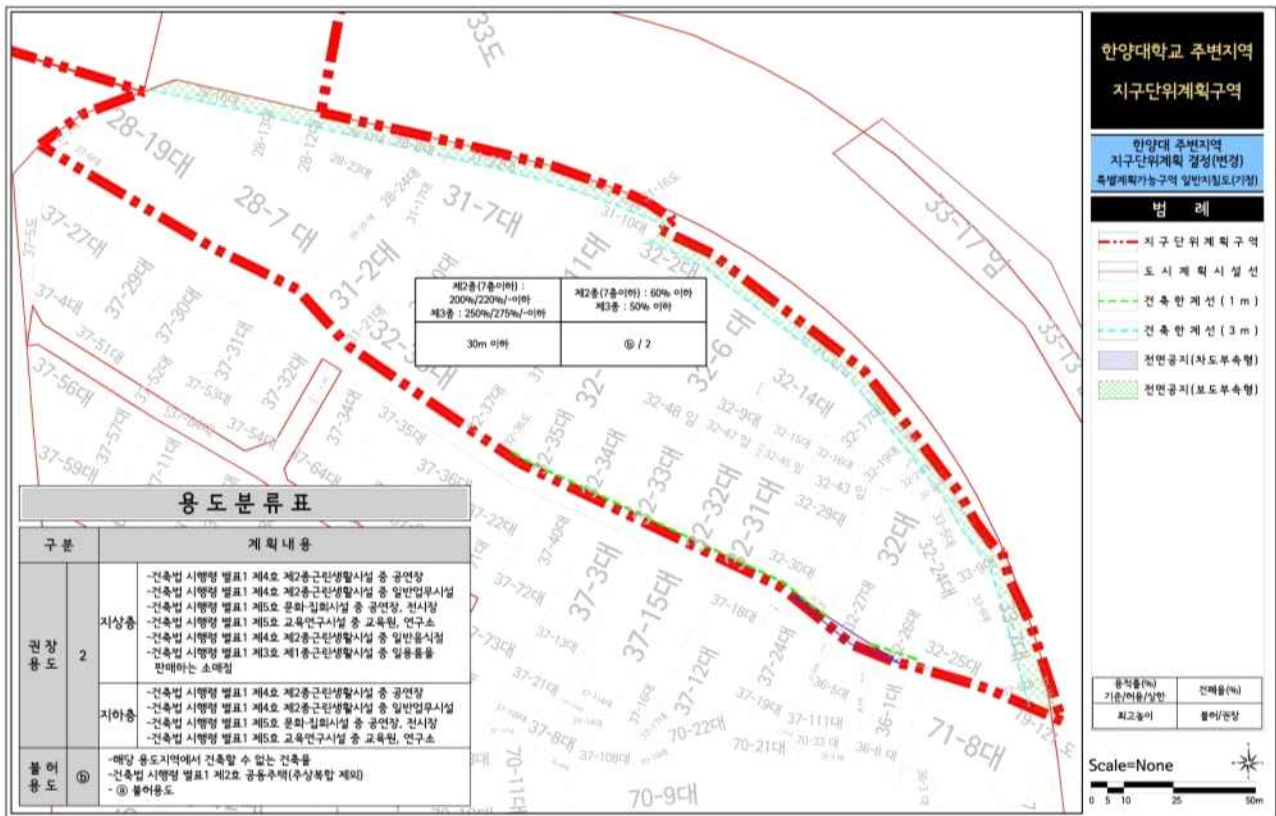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종합결정(기정)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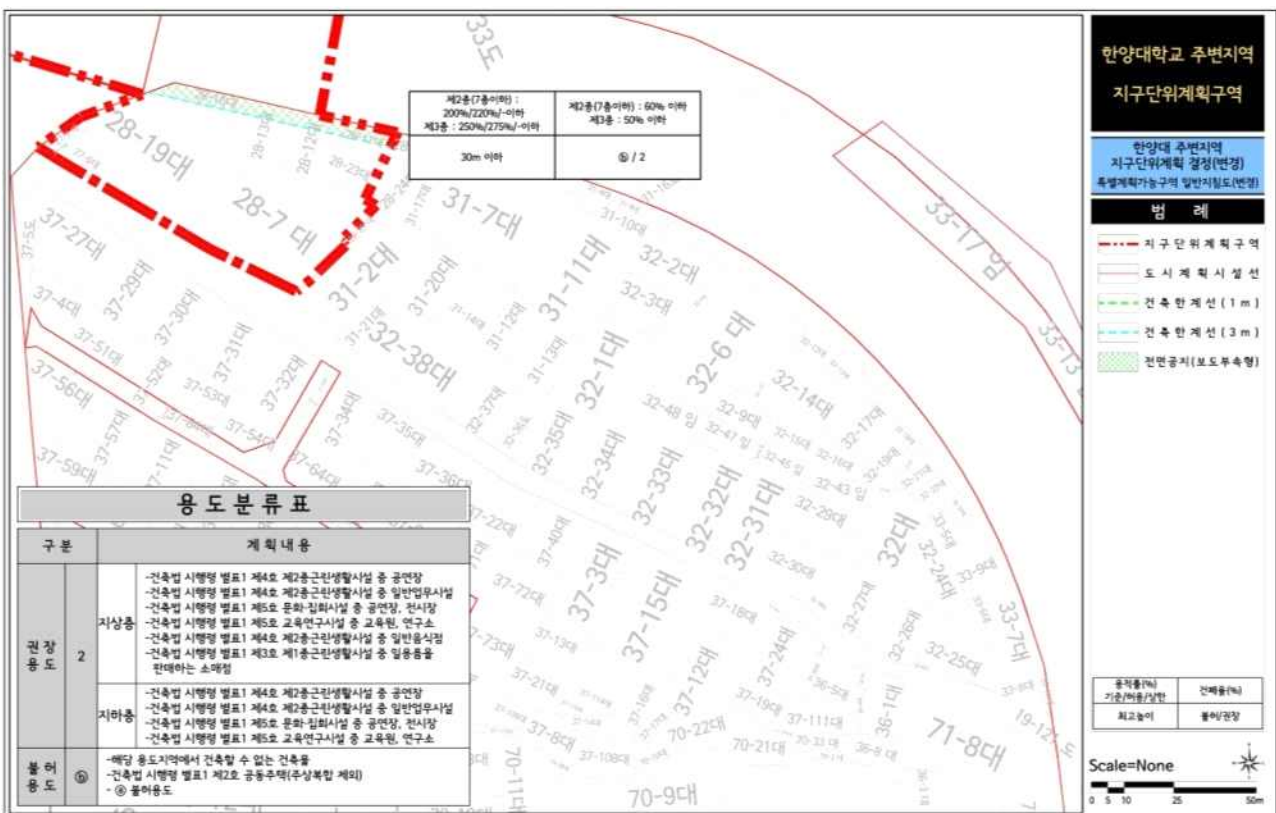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종합결정(변경)도 〉


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지침도(기정) 〉



〈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지침도(변경) 〉



- 이하 여백 -